

# 부 의 안

1. 제안부서 : 마곡위례사업단 기전사업부

2. 제안근거 :

가. 설계변경 심사위원회 운영기준(2016년)

3. 제안사유

가. 관련근거: 설계변경 심사위원회 운영기준에 의거 “위례지구A1-10블럭 아파트 건설 기계공사”에 대한

- ① 세대 화장실 환풍기용 전기식 모타댐퍼 설치에 따른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여,
- ② 상기 설계변경에 대한 적정성 및 신규비목에 대한 협의율 사전심사

4. 심사·의결 요구사항

가. 세대 화장실 환풍기용 전기식 모타댐퍼 설치 적정성

설계변경 내용

구 분	설치위치	변경 내용	
		설 계	변 경
배기설비	세대 화장실 천장	휨+역풍방지 댐퍼(B.B.D*) 설치	휨+전기식 모타댐퍼(M.D*) 설치

\*B.D.D[Back Draft Damper]

\*M.D[Moter Damper]

소요예산: 약110,948천원

- 설계단가: 32,000원/EA
- 수 량: 3,198EA(39형,49형:1,202EA, 59형,74형:1,996EA)

설계변경 사유

- 현재 공사 진행중인 위례지구A1-10블럭 현장은 사업 승인일이 2013년12월23일로 개정된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칙의 시행일 이전에 해당하여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,

- 공동주택 입주민으로 부터 아랫층 세대의 화장실 담배 연기가 세대 환풍기로 들어오고 악취 냄새가 역류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,
- 또한 우리공사에서 추후 건설 예정인 위례지구는 의무사항에 해당됨으로 위례지구 건설 단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례지구A1-10 단지 아파트 화장실 배기 설비에
-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반영하여 화장실 천정에 설치된 배기 환풍기를 강제 개폐가 가능한 전기식 모타댐퍼를 부착하여 입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함

□ **관련근거: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(배기설비)6.가.**

(내 용) : 세대안의 배기통에 자동역류방지댐퍼(세대 안의 배기구가열리거나 전동환기설비가 가동하는 경우 전기 또는 기계적인 힘에 의하여 자동으로 개폐되는 구조로 된 설비를 말한다) 또는 이와 동일한 기능의 배기설비 장치를 설치 할것

(시행일) : 2015. 9. 18

**나 신규비목에 대한 낙찰율 사전심사**

- 신규비목 단가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2항에 의하여  
 $[\text{낙찰율}(75.806\%) + \text{신규단가}(100\%)] / 2 = 87.903\%$ 로 적용

2016년 03월 일

제 안 자 : 기 계 3 급 허 원 ㉠

## 제 2016-1 회 위원회 소집통보

수 신: 기전사업부, 기전설계부, 계약심사부, 예산자금부, 재정관리부

다음과 같이 위원회 소집을 통보 합니다

1. 일 시: 2016년 3월 일

2. 장 소: 기전사업부 회의실

3. 의 안

제안번호	제안제목	제안내용	제안부서
제2016-1호	세대 화장실 환풍기용 전기식 모타댐퍼 설치에 따른 설계변경	1)세대 화장실 환풍기용 전기식 모타댐퍼 설치에 따른 설계변경 적정성 2)신규비목에 대한 협의 을 사전심사	마곡위례사업단 기전사업부

103681457567379

4. 세부내용: "별첨"(설계변경 요약서)

2016년 03 월 일

위 원 장

이 광 윤 이광윤

## 서면 및 의결(안) 검토의견서

설계변경 서면 결의 및 의결(안)에 따른 추가 및 기타 의견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검토의견란에 의견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제2016-1회 위 원 회			
년 월 일	2016 년 03월 일	의안번호	제2016-1호
의 제			

구 분	성 명	검 토 의 견
위 원 장	이광윤 단장	없음
부위원장	박기호 부장	없음
위 원	정택용 팀장	없음
위 원	오성근 차장	없음
위 원	양대웅 차장	없음
위 원	엄규범 차장	103681457567379 없음
위 원	박홍주 차장	없음

# 설계변경관리대장

1. 공 사 명 : 위례지구A1-10블럭 아파트 건설공사
2. 공사기간 : 2014. 11. 10 ~ 2017. 4. 15
3. 공 종 명 : 기계설비
4. 최초계약금액(목표원가) : 43,817,532천원(57,993,000천원)
5. 설계변경내용

(단위 : 천원)

변경 일자	공종	설계변경 주요내용	설계변경금액		최초계약금액대 비 설계변경율(%)	
			당해	누계	당해	누계
<b>□ 설계변경 상한율 관리항목</b>						
2016.3	기계	세대 환풍기용 전기식 모타뎀 퍼설치	110,948	110,948	0.25	0.25
	소계		<b>110,948</b>	<b>110,948</b>	<b>0.25</b>	<b>0.25</b>
<b>□ 설계변경 별도 관리항목</b>						
	소 계					
	합 계					

# 공종별/시점별 설계변경 이행 준수 관리대장

1. 공 사 명 : 위례지구A1-10블럭 아파트 건설공사
2. 공사기간 : 2014. 11. 10 ~ 2017. 4. 15
3. 공 종 명 : 기계설비
4. 공 정 율 : 22%
5. 주요공사 내용
  - 세대 스리브설치공사
  - 지하주차장배관공사
  - 입상배관공사

연번	설계변경 주요내용	대상공종	의무완료제 준수 여부	단계별 완료시점 (공정표완료시점)
1	세대 환풍기용 전기식 모타댐퍼설치	기계	준수	S+20개월

- 설계변경 의무완료제 미준수
- 사유 :

# 의 결 안

제2016-1 회 위 원 회			
년 월 일	2016년 3월 일	의안번호	제2016-1호
의 제	1. 세대 화장실 환풍기용 전기식 모타댐퍼 설치에 대한 설계변경 사항 2. 신규비목에 대한 협의율 사전심사		

## 1. 제안부서 : 마곡위례사업단 기전사업부

## 2. 제안근거: 설계변경 심사위원회 운영기준(2016년)

## 3. 제안사유

설계변경 심사위원회 운영기준에 의거 "위례지구A1-10블럭 아파트 건설 기계공사"에 대한

- ① 세대 화장실 환풍기용 전기식 모타댐퍼 설치에 따른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여,
- ② 상기 설계변경에 대한 적정성 및 신규비목에 대한 협의율 사전심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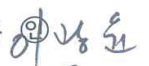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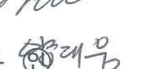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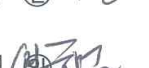

## 4. 심사·의결 사항

구 분	변 경 내 용	증감액	비고
1) 세대 화장실 환풍기용 전기식 모타댐퍼 설치에 따른 설계변경	세대 화장실 환풍기에 전기식 모타댐퍼를 설치하여 아래층 세대의 담배 연기 및 냄새가 화장실 환풍기로 들어와 입주민으로 부터 지속적인 반복 민원에 대한 근본적 해결 조치	증)110,948천원	
2) 신규비목에 대한 낙찰율 사전심사	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2항에 의하여 [낙찰율(75.806%) + 신규 단가(100%)]/2=87.903%로 적용	-	
	소 계	증)110,948천원	

위 안건의 설계변경 내용 및 신규비목 협의 낙찰율이 적정함

제2016-1회 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의 내용과 같이 심사의결 하였음

2016년 3월 일

위원장	마곡위례사업단장	이 광 윤	
부위원장	기전설계부장	박 기 호	
위원	기전사업부	정 택 용	
위원	기전설계부	오 성 근	
위원	계약심사부	양 대 응	
위원	재정관리부	엄 규 범	
위원	예산자금부	박 흥 주	



# 설계변경 요약서

## 1. 세대 화장실 환풍기용 전기식 모타댐퍼 설치(안)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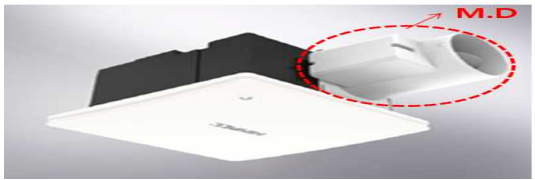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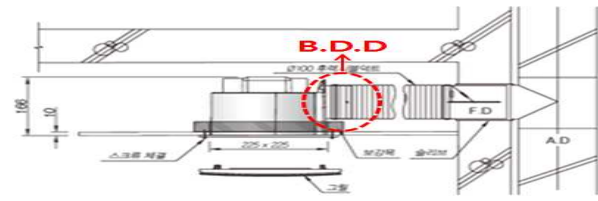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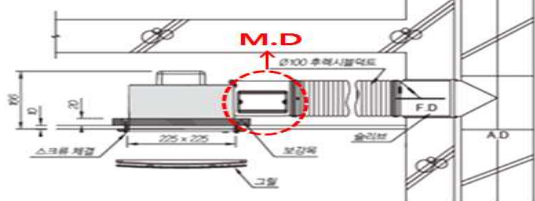
### 설계변경 내용

구 분	설치위치	변경 내용	
		설 계	변 경
배기설비	세대 화장실 천장	휨+역풍방지 댐퍼(B.B.D*) 설치	휨+전기식 모타댐퍼(M.D*) 설치

\*B.D.D[Back Draft Damper]

\*M.D[Moter Damper]

### 사진대지

구 분	설 계 (휨+역풍방지 댐퍼(B.B.D)설치)	변 경 (휨+전기식 모타댐퍼(MD)설치)
제품도		
설치도		

### 소요예산: 약110,948천원

○ 설계단가: 32,000원/EA

○ 수 량: 3,198EA(39형,49형:1,202EA, 59형,74형:1,996EA)

### 설계변경 사유

- 현재 공사 진행중인 위례지구A1-10블럭 현장은 사업 승인일이 2013년12월23일로 개정된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칙의 시행일 이전에 해당하여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,
- 공동주택 입주민으로 부터 아랫층 세대의 화장실 담배 연기가 세대 환풍기로 들어오고 악취 냄새가 역류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,

- 또한 우리공사에서 추후 건설 예정인 위례지구는 의무사항에 해당됨으로 위례지구 건설 단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례지구A1-10 단지 아파트 화장실 배기 설비에
-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반영하여 화장실 천정에 설치된 배기 환풍기를 강제 개폐가 가능한 전기식 모타댐퍼를 부착하여 입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함

□ **관련근거: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(배기설비)6.가.**

(내 용) : 세대안의 배기통에 자동역류방지댐퍼(세대 안의 배기구가열리거나 전동환기설비가 가동하는 경우 전기 또는 기계적인 힘에 의하여 자동으로 개폐되는 구조로 된 설비를 말한다) 또는 이와 동일한 기능의 배기설비 장치를 설치 할것

(시행일) : [2015. 9. 18](#)

**2. 신규비목에 대한 낙찰율 적용(안)**

- 신규비목 단가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2항에 의하여  
 $[\text{낙찰율}(75.806\%) + \text{신규단가}(100\%)] / 2 = 87.903\%$ 로 적용